

企業經營과 稅金講話 2



李文宰

韓国税金會計研究会会長

第4講 所得税라는 稅金

우리 나라의 현행 所得税는 이를 分類所得과 綜合所得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分類所得의 課稅物件 곧 所得의 種類는 5 가지 인데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으로 나누어 진다. 종합소득세는 이들 分類所得의 合計額이 年間 5百万을 넘는 사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稅制改革에서는 과세 대상을 3百万원으로 할 것 같이 들려지기도 하나 確實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5 가지의 分류소득이 있는 者에게 각각 当該 分類所得税를 과세하고 다시 分류 소득을 합계한 금액이 연간 5百万원 이상인 자에게는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分류소득의 하나 하나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의 과세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不動產所得税

不動產所得은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인 과세소득의範圍는 다음과 같다.

① 土地와 그定着物 곧 建物등의 貸與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② 登記된 船舶의 貸与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③ 登錄된 航空機나 自動車의 貸与로 因하여 생기는 所得

④ 鉱業財團과 工場財團의 貸与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⑤ 鉱業權者, 租鉱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与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⑥ 広告宣傳을 위하여 不動產을 使用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⑦ 地上權 地後權의 設定 또는 不動產上의 權利의 貸与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⑧ 不動產 또는 不動產上의 權利를 貸与하여 保証金 先貢金 伝貢金 기타 이에 類似한 金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金額에 月2.5%를 곱한 금액에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

과세소득의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데 소득은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課稅期間이 年2期(1月~6月, 7月~12月)이므로 6個月間의 貨貸料등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것이 소득금액으로 된다.

稅率은 다음과같이 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10万원以下의 金額	16.5%
10万원초과하는 "	22%
25万원 "	33%
60万원 "	44%
150万원 "	55%
250万원 "	60.5%

필요경비는 총수입경비에 대응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記帳이나 申告가 불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바 認定課稅라고하는 政府推計決定을 하게 되는데 추계결정을 할때에는 다음 표준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되어 있다.

(가) 垒地의 貸与一收入金額의 20%

(나) 家屋의 貸与로 인한 경우

① 家主所有의 垒地인 때一收入金額의 40%相當金額

② 他人所有의 垒地인 때一收入金額의 50%相當金額

(다) 船舶의 貸與一收入金額의 60%相當金額

〈例 ①〉

自家壟地上의 自家建物을 保証金 2百万원에 月貰 2万원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면 한 課稅期間(6個月)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text{月貰 } 20,000 \times 6 \text{ 月} = 120,000$$

$$\text{保証金 } (2,000,000 \times 2.5\%) \times 6 \text{ 月} = 300,000$$

$$\text{收入金額計 } 420,000$$

$$\text{必要經費 } 420,000 \times 40\% = 168,000$$

$$420,000 - 168,000 = 252,000 \cdots \text{所得金額}$$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0\% = 33,000$$

$$2,000 \times 33\% = 660$$

$$\text{納付税額 } 50,160$$

〈例 ②〉

堡垒를 月貰 없이 保証金 5百万원에 貸與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같이 된다.

$$(5,000,000 \times 2.5\%) \times 6 \text{ 月} = 750,000 \cdots \text{收入金額}$$

$$750,000 - (750,000 \times 20\%) = 600,000 \cdots \text{所得金額}$$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2\% = 33,000$$

$$350,000 \times 33\% = 115,500$$

$$\text{納付税額 } 165,000$$

所得과 稅額의 계산은 위 例示에서 알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法定標準經費額이 없는 財產의 貸與所得에 대하여 추계결정할 때에는 年2期로 分하여 國稅廳長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소득세의 申告와 自進納付는 每年 第1期分은 8月末까지, 第2期分은 翌年 2月末日까지로 되어 있으며 한 기간의 수입금액이 450万원 이하인 자가 이와같은 법정기한내에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를 할 때에는 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그리고 한 기간의 소득금액이 2万원에未達하는 경우에는 이를바 免税点이라고 하는 課稅

最低限에 해당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田畠의 貸付나 利用을 하게 함으로서 생기는所得은 非課稅로 한다.

II. 配当利子所得

配当利子所得은 이를 甲, 乙, 丙種으로 나누어 甲種은 国内支給의 社債利子, 預金積金의 利子, 債券의 利子, 信託利益과 内国法人으로부터 받는 配当 또는 剩余金의 分配이며 乙種은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配当 또는 分配, 外國法人의 社債利子, 国外의 預金利子 및 信託利益등이고 丙種은 非營業貸金의 利子에 대하여 課稅한다.

이 가운데서 国債와 政府가 保証하는 債券의 利子 및 割引額, 預金積金등의 利子, 公益信託 및 合同運用信託의 信託財產에서 생기는所得과 證券投資信託의 信託財產에서 생기는所得, 法人税法上의 公開法人과 證券去來所에 上場되고 있는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金, 開墾및 干拓事業을 嘗為하는法人이 그事業으로부터 생하는 利益配當 또는 分配金, 金融機関이 周旋 또는 募集한 社債券의 利子(但 總發行額의 10%以内所有者에 限함)등은 内資動員에 따른 賦蓄増大라는 政策의 理由에서 非課稅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預金 積金등의 利子에 대해서는 課稅할 方針인양 伝聞되고 있으나 그改正与否는 두고보아야 알겠다.

배당이자소득의 세율은 일율적으로 16.5%로 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甲種과 丙種은 一般源泉徵收義務로 되어 있음으로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하여 翌月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丙種은 非營業貸金의 이자임으로 흔히 말하는 私債의 이자를 말한다. 따라서 私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하는 이자액에 16.5%를 끌한것을 세액으로하여 源泉徵收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사채이자를 두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企業體에서 장부상 기록되고 있는 것뿐

이며 그밖의 사채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아니하는 까닭은 私的去來를 세무당국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甲種과 乙種配當에 있어서는 사실상 배당을 받지 아니 했는데도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되는 것을 擬制配當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도 16.5%를 源泉徵收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法人税法上의 公開法人이 아닌 非公開法人에 있어서는 每決算期의 留保所得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5.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紙上配當이라고 한다. 먼저 擬制配當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① 減資를 할 때 出資金額보다 超過하여 還給하는 金額

② 会社의 留保利益을 資本金에 転入하고 株주에게 無償株를 發行하였을 때

③ 会社가 解散을 할 때 残余財產의 還給金이 株金을 超過하는 金額

④ 会社가 合併할 때 合併 또는 新設하는 会社가 合併으로 吸收하는 株주에게 交付金을 주거나 元株式을 초과하여 發行하는 株式金額

〈例〉

① 甲会社는 納入資本金 1億원中 2분1을 減資하기로 決議하고 帳簿価額 5千万원의 土地를 減資還給金條로 株주에게 讓渡하였다. 그러나 그 土地는 時価가 8千万원이라고 한다면 超過額 3千万원은 擬制配當으로 되어 갑종배당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会社는 3千万원의 所得漏落으로 취급되어 범인세가 추징된다.

② 乙会社는 資本計定上 積立되어 있는 利益準備金 5百万원, 資本準備金 5百万원 都合 1千万원을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資本金에 転入하고 登記를 끝냄과 동시에 株주에게 이를 無償株로서 發行하였다. 이경우는 株주가 받는 無償株는 株式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擬制配當으로 된다. 따라서 甲勤稅(16.5%)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③ 丙会社는 納入資本金이 1千万원인데 解散을 하고 清算을 한바 残 財產価額이 2千万원 임으로 株주에게 株金의 倍額을 還給하였다. 이경우는 資

本金을 超過하여 還給된 1千万원이 擬制配当 으로 된다.

④ 甲会社와 乙会社는 合併을 하고 乙会社는 消滅하였다. 그런데 乙会社의 株主는 甲会社로 부터

1株(額面千원)에 대하여 2株의 新株를 받고 그 밖에 現金으로 1株당 5百원씩 받았다. 이 경우는 더 받은 1株와 交付金 5百원이 擬制配当으로 된다.

「紙上配當」은 이익배당을 아니했는데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배당이자소득세(5.5%)를 과세하는 바위에서 말한 의제배당은 실질적인 배당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나 지상배당은 배당을 하지 않고 會社内部에 留保시키기고 있는데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모순인 줄 알면서도 이 제도가 생겨난 까닭은 종합소득세제의 실시상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써 세율만은 다른 배당이자소득이 모두 16.5%인데 反하여 5.5%로 낮추고 있다.

지상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은 非公開法人的 留保된 소득에서 法人稅額과 商法上の 利益準備金(法定積立이라고도 하며 利益의 5% 이상을 資本금의 $\frac{1}{2}$ 에 達할 때까지 積立하여야 함)을 공제한 나머지가 지상배당으로 된다.

〈算式〉

各事業年度의 所得(非課稅, 免除所得包含) - 利益
处分의 賞與, 配當 其他社外流出 = 留保所得

留保所得 - (法人稅額 + 利益準備金) = 紙上配當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각事業年度의 소득에는 세무계산상의 익금가산도 포함되어 이익처분의 社外流出 외에 세무계산상 流出로 된 것도 이에 포함한다는 점과 법인세액은 当該事業年度의 法人稅相当額을 말하며 利益準備金은 會社가 이익처분으로 한 금액을 말하되 資本금의 $\frac{1}{2}$ 에 達할 때 까지의 金額만을 말한다.

III. 事業所得

事業所得은 商, 工, 山林, 畜產, 自由職業, 其他

사업등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곧 이들 사업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1. 課稅所得의 範囲

事業所得의 과세범위를 좀 더 상세히 말한다면 嘗業稅法에 의해서 영업세가 課稅되는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所得과 山林業, 畜產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自由職業과 其他事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다. 이 가운데 自由職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각종 소득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著述, 書画, 図案, 彫刻, 作曲, 音楽, 舞踊, 漫画, 插画, 漫談, 俳優, 声優, 歌手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② 演藝에 관한 監督, 脚色, 演出, 摄影, 錄音, 装置, 照明,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③ 設計監督, 建築監督, 技術指導, 技術用役提供(技術研究用役은 除外한다)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④ 音楽, 裁断, 舞踊, 料理, 社交舞踊, 바둑의 教師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⑤ 職業運動家, 力士, 騎手, 運動指導家(審判을 포함한다)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⑥ 接待婦, 댄서와 기타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⑦ 保險加入業者の 募集, 賽蓄의 嘉獎 또는 集金 등을 하고 実績에 따라 保險会社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받는 募集手当, 勸獎手当, 集金手当(내勤社員이 支給받는 경우를 例外한다) 또는 이에 유사한 自由職業所得

⑧ 일의 成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手当과 이에 유사한 性質의 代價로 받는 所得

또한 「其他事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은 다음과 같다.

① 医療業, 調剤業, 接骨業, 按摩業, 鍼灸業과 기타 医術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② 緯護士業, 公証人業, 執達吏業, 緯理士業, 司法書士業, 鉛業代書士業, 行政代書士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

③ 公認会計士業, 税務士業, 評価人業, 通関業과 기타 이에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所得

④ 技術士業, 建築士業, 導船士業, 設計製図士業, 測量士業과 기타 이에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所得

⑤ 広告業과 新聞支局을 経営하여 생기는所得

⑥ 学院, 講習所, 教習所, 相談所, 職業紹介所와 興信所를 経営하여 생기는所得

⑦ 鳥類의 飼育과 놋, 늑, 손 등을 利用한 금붕어, 鯉魚 등의 養魚와 魚類 및 水草類의 捕獲事業을 経営하여 생기는所得

⑧ 부화기를 이용한 부화(畜産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蟹種의 生산으로 생기는所得

⑨ 作名, 觀相, 占術, 巫堂, 運命鑑定을 業으로 하여 생기는所得

⑩ 狩獵, 川獵등 이와 유사한 業으로부터 생기는所得

⑪ 개, 犬, 말등 家禽이나 動物의 訓練을 業으로 하여 생기는所得

⑫ 養蚕事業에서 생기는所得

2. 必要経費의 計算

事業所得은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経費를 控除한것이 된다. 필요경비는 각期中の 總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를 말하는데 税法上의 몇 가지 제약을 제외하고는 企業會計上의 期間計算主義에 의한 비용과 다를바 없다. 税法上의 제약이란 事業所得者自身的 約束과 비슷한 費用의 限度超過額, 減価償却範圍超過額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는 法人税法과 거의 같으므로 追後法人税篇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必要経費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 내용을 알려면 現行法令上 다음에서 明示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① 所得稅法施行令 第45条 내지 第66条

② 所得稅法 第19条의 3 내지 第21条

③ 所得稅法施行規則 第58条 내지 第67条

3. 税率

事業所得稅의 税率은 不動產所得稅와 同一하다.

4. 申告納付와 帳簿의 備置

申告와 納付의 期限은 不動產所得과 동일하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申告期限内에 税務署長에게 신청하여 申告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事業場別로 「外形金額에 따라 複式簿記, 簡易帳簿, 日記帳에 의한 帳簿를 備置하고 事業에 관하여 모든 去來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는 바」

① 業種이 運送保管業과 기타 サービス業中 都給代理仲介 및 物產客主業에 있어서는 直前期 또는 直前前期의 外形金額이 千万원以上

② 그밖의 事業에 있어서는 2千万원 이상인 때 複式簿記의 義務가 있다.

다음에 위 ①의 業種의 外形金額이 450万원 ②의 業種은 900万원 이상인 때에는 簡易帳簿를 이들의 경우보다 이하인 者는 日記帳을 備置記帳하여야 한다.

日記帳 義務者가 日記帳을 記帳한테 대하여는 그 帳簿에 의하여 算出된 所得金額에 상당하는 税額의 10%를 記帳控除로서의 혜택을 주며 日記帳義務가 期限内 自進申告納付를 할 때에는 다시 10%를 控除한다. 반면에 複式簿記와 簡易帳簿 義務者가 記帳을 不履行한 히 대하여는 不履行加算税로서 5%, 또 申告를 아니하거나 적게 한 경우에는 10%를 加算税로서 添加한다.

5. 推計決定

稅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推計決定(認定課税)을 한다.

推計決定의 方法은 외형거래액에 国税庁이 조사 결정한 所得標準率을 곱하여 所得金額을 결정한다. 소득표준율이란 業種別로 또 課稅期間別로 國세청이 결정하는 業種別의 所得率을 말한다.

〈例〉

6個月間의 販売金額이 2千万원이고 그 業種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3%라고 한다면 所得金額은 60万원으로 된다.

6. 非課稅所得

課稅所得範囲에서 열거한 소득중 文芸·學術·美術·音楽 또는 写真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한 稿料는 非課稅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 둘것은 이들 非課稅에 해당하는 稿料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말한 범위의 創作品에 대한 原稿料라야만 하는 것이다.

〈例〉

① 演芸에 관한 脚色料일 때에는 非課稅로 되지 아니한다. 理由는 創作에 대한 代価(原稿料)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美術이나 写真에 있어서 複製 또는 複写하여 販売하는 것은 創作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課稅를 하는 것이며 国展을 비롯한 各種 展示場에 出品한 東洋画, 西洋画, 書芸 또는 彫刻등의 創作品을 願買者에게 販売하고 代価를 받는 것은 非課稅로 된다.

7. 一般源泉徵收와 事業所得

一般源泉徵收란 該當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者는 누구이고 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事業所得中에는 위 과세소득범위에 열거되어 있는 自由職業所得이 一般源泉徵收에 해당한다. 따라서 自由職業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그 支給金額에 1.1%의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源泉徵收하여 翌月10日까지 所管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自由職業所得中에서 ④ 및 ⑤에 該當하는 것과 興行業者가 出演者에 支給하는 出演料만은 源泉徵收를 아니한다.

④에 該當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樂裁断, 舞踊, 料理, 社交舞踊, 바둑의 教師이고 ⑤에 該當하는 것은 職業運動家등인데 그밖의 모든 自由職業所得은 그 所得을 支給하는 者가 源泉徵收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支給金額이 6千원 未滿일 때에는 源泉徵收를 아니하여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稅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複雜多岐한가를 느끼게 한다. 事業所得中 自由職業所得에 대해서는 그 1部만을 除外하고 나머지는 一般源泉徵收의 義務가 있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義務不履行을 모르는 사이에 敢行하고 있을 것으로본다. 그 예로 自由職業所得에는 接待婦와 メン사가 들어 있는데 많은 술꾼이 이들에게 팁을 주고 源泉徵收를 하여 翌月10日까지 稅務署에 納付한 일이 있는지? 각者が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한다. 源泉徵收의 免除線이 支給金額 6千원 未滿으로 되어 있어 이에 未達하는 支給을 할때에는 義務가 없지만-

(계속)



「tfoot」에도 源泉徵收를 해야